

2021년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 설립 후 3년 이내(SpeedUp)에 2개국 이상의 해외시장에 진출(ScaleUp)하여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이 25% 이상(SclaeUp)을 달성한 창업기업

□ **지원규모** : 12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대상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1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유의사항) '필수적' 성과목표 달성(해외 매출계약 또는 국내·해외 투자 유치 등)을 전제로 지원(목표 미 달성 시 기술개발 '미완료'로 판정)
- * 관련 내용은 "4. 신청자격 등" 확인 후 신청

□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한도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2년	최대 2년, 4억원 이내 (연간 2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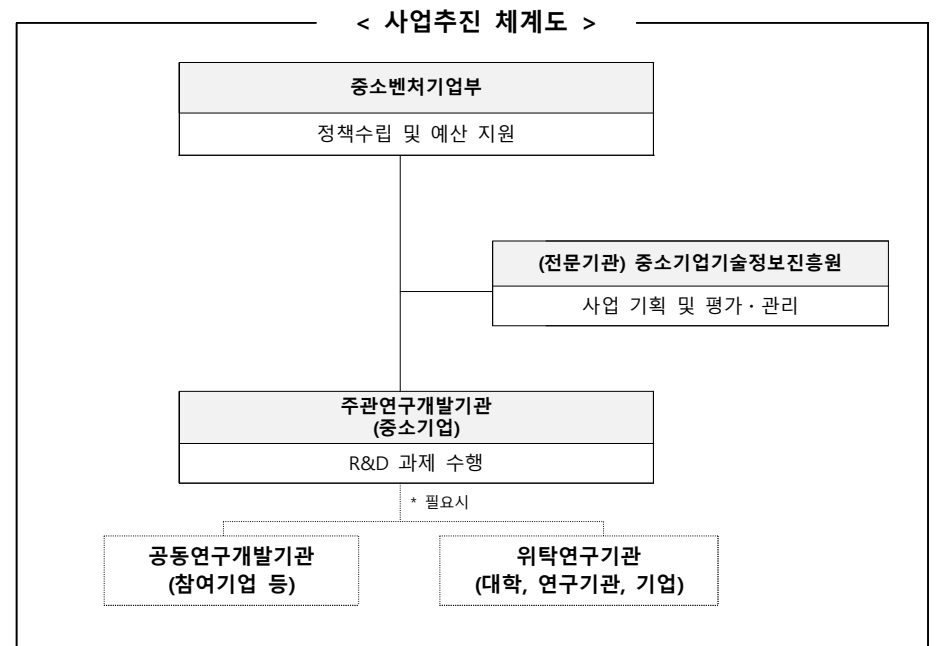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억원, 1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1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1년 이내이고, 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서 확인·검토)

** 창업의 범위, 설립일(사업개시일), 창업자 등의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준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을 20% 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합계 금액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80	2	18	20	200
2차년도	180	2	18	20	200
합 계	360	4	36	40	400
총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90.0	-	-	10.0	100

- * 사업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6억원(1.8억원/년) 지원한 경우를 가정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원)의 10.0%임

4.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이고, **수출 및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 *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12페이지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의 ③ 참조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기준 관련 참고 >

세부 기준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창업 1년 이내) 판단 * <참고 1> 창업 여부 확인 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필수제출서류인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성과(아래 ‘필수적’ 성과 목표 참조) 달성이 가능한 기업(미달성 시 과제 ‘미완료’로 간주)

☞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위원회에서 **평점 60점 이상 획득하고 아래의 <‘필수적’ 성과목표> 중 최소 1개 이상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완료’ 판정

< ‘필수적’ 성과 목표 >

‘필수적’ 성과목표(4개)	가중치	비고
해외 매출계약 또는 국내·해외 투자유치	20%	1개 이상 (10% 이상) 달성 필수
해외 특허 출원 또는 등록 2건 이상	10%	
해외 2개국 이상 수출 실적 달성 (기술개발 기간 내에 현지법인 계약체결 등 완료한 경우 인정)	10%	
해외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기술개발 기간 내에 완료한 경우 인정)	10%	

* 과제 최종평가 항목(100%) : ‘필수적’ 성과목표(50%), 기술성(20%), 사업성(30%)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요청 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은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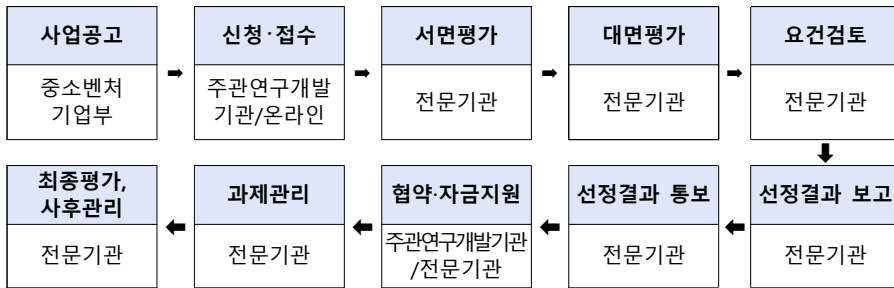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 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⑦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⑧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붙임1 참조)를 접수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과 함께 반드시 공고 접수기간 내 필수 제출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서면평가(3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글로벌진출전략서 중심으로 기술성 및 사업성 서면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목표 과제 수의 2배수 내외의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text{종합평점} = \frac{\text{서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대면평가(4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을 담은 계획서(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의 구체성,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의 해외 사업화 계획, 수출 및 해외 진출 전략,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대면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에 따라 일자리평가 우수기업을 우대(대면평가 시 2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 과제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검증 후 대면평가에 반영
 - * 일자리평가 세부기준은 <참고3> 자료 참조

□ 요건검토(5월)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추천과제 중 신청자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확인
 - * 과제 신청시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신청자격 등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상이한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상기 내용 중 4. 신청자격 등 참고

□ 지원과제 확정(5월)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동점자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사업성>기술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6.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1. 2. 25(목) ~ '21. 3. 25(목) (30일간)
- (접수기간) '21. 3. 12(금) ~ '21. 3. 25(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확인 및 출력을 통해 정상제출 여부 확인 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 마감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본문1과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글로벌진출전략서(붙임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필수 업로드(미제출 시 요건제외)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15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
		본문2	○
②	글로벌시장진출전략서 *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의 R&D 중점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수출전략 등 작성 제출 :①기업 경영 현황, ②수출실적 또는 대표사례 ③ 해외 사업화 계획 ④ 수출 및 해외 진출 전략, ⑤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설정 등 ** 10페이지 이내 작성(별도 증빙은 페이지 산정 제외),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 증빙서류 해당(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④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신규 채용(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
⑤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⑥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⑦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⑧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⑨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치) 동의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은 SMTECH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

7.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인건비 산정 기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자가 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인건비 계상한도)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 * 현금 연구개발비가 1억원인 경우, 현금으로 계상가능한 인건비는 5천만원 이내
 -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기존인력 현금계상) 기존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 예시) 기업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인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 사업신청 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현물 대체 적용
 - * 상세 내용은 과기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8. 유의사항

-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아래의 세부 사업 기준으로 1개의 세부과제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 * '20년 이후 신규 선정된 단독형(창업성장, 기술혁신개발) 과제부터 적용

<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기업주도형 사업 주요사업 안내 >

세부사업명	졸업제 적용 여부	세부 사업 간 동시수행 가능 여부
창업성장기술개발	○	불가 (1개 과제만 수행가능)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	○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	

- ②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20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 사업을 4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는 졸업제 미적용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③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수행횟수는 대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개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개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개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적용 사업(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글로벌 창업기업기술개발),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 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④ 상기 ③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 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㉞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값 반영

㉟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⑤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 ⑥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 ⑦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삭감

-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㉗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 ⑩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9.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센터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험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험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험협약 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붙임1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서(필수제출서류)

작성분량 10page이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서 (수행기관명)

I. 기업 현황 (1 Page이내 작성)

1. 주요 회사 연혁

년 월 일	주요내용(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이전, 해외조직 설립 등)

2. 경영실적 지표

(단위: 천원, US\$)

구분	2020년	2021년 예상	2022년 예상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3. 수출 실적

년도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가명	수출방식 (직매입/위탁)	수출액(단위 : 천불)
2020년				
2021년				

-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 중소기업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수출대행계약서, 계약이행증빙자료 등 별도붙임 제출

4. 거래처 현황

구분	거래금액(천원)	거래품목명	기업명	거래비중(%)
2020				
2021				

II. 해외시장 진출 전략 계획

1. 해외 시장 진출 목표

(단위 : 천원, %)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수출 성과	예상 제품 수출액(B)						
	매출액 대비 수출 점유비율 (C) (C=(B/A)*100)						

2. 수출 목표 산정 근거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산정근거	참고자료명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개발기술의 수출 성과	예상 제품 수출액		

3. 예상 수출 품목

수출 품목명	품목용도	품질 및 가격경쟁력	수출여부	판매채널 (은·오프라인)

4. 세부 계획

* 사업목표, 세부내용, 성과창출방안 등 자유롭게 서술

'필수적' 성과목표

< '필수적' 성과목표 >		
사업 필수성과 지표[수정불가]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제안하는 최종 성과목표 성과(% , 건)	평가항목 점수 비중(%) [수정불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이상 달성	수출액 비중 00%이상 달성	20%
해외 특허 출원·등록 2건 이상	출원0건, 등록0건	10%
해외 2개국 이상 수출 실적 달성	수출 0개국	10%
해외 현지법인 설립	0건(나라명)	10%
< [참고] 사업 정량성과 인정기준 >		
사업 필수성과 지표[수정불가]	인정사항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이상 달성	- 기술개발 종료이내 기준(설립 3년 이내)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증빙 * 결산 재무제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원장 ** 예시) 직전년도 기준(설립 3년 이내) 결산 재무제표와 동일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빙 등 비중 증빙	
해외 특허 출원·등록 2건 이상	- 국외 특허 또는 PCT 출원서·등록서 인정 - 기술개발 기간 내 달성한 경우 인정(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내용 및 기술개발과 상관없는 공동 출원인 인정 불가)	
해외 2개국 이상 수출 실적 달성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원장 - 기술개발 기간 내 달성한 경우만 인정	
해외 현지법인 설립	- 법인등본 등 주주명부가 포함된 주권기관과 관련성을 인증 - 기술개발 기간 내 달성한 경우만 인정	

* 사업 필수성과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만 인정

- 해외 거래처 MOU 등 정성적 목표, 추가적 목표 등 자유롭게 작성

사업추진체계

매칭기업(바이어) 발굴계획

세부추진계획

- 상품페이지 제작·리스팅, 물류, 배송, CS, 수수료, 마케팅·홍보 등

성과창출방안

해외 특허·인증 획득 전략

III. 후속 일정 및 기타

1. 연간 해외진출·마케팅 일정

* 국가별 시즌별 주요 글로벌플랫폼 행사(예-중국 광군제 11월, 화장품 가격할인전) 활용 마케팅 뿐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방안 등 제시

2. 기타 수출 성공 또는 대표사례

수출 성공 또는 대표사례	
---------------	--

* 별도 첨부 가능

3. 기타

--

참고1

창업 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주5)}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주5)}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주5)}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5.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자를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참고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단,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른 가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5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③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3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최대 2점	“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2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 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⑪	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	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점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⑬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 발급한 서류
⑭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2점	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1점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⑮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⑯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⑰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A등급인 경우	3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 등급이 B등급인 경우	1점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
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2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⑲	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⑳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	2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점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선정평가(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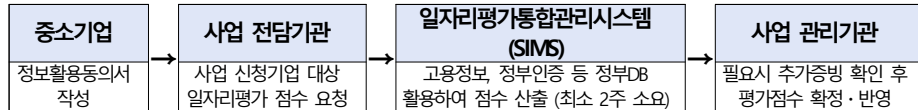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단일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으로 3회 이상 누적된 기업	1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i)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된 과제, ii)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iii) 최종 보고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 '15년 신규 수행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며, 기술 임치 의무와 무관한 사업은 제외	1점	

참고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

1. 개요 :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선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구)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19년부터 명칭 변경)
2. 절차 : 기업의 사용자지표 데이터를 일자리평가 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하여 점수 제공 (최소 2주 소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절차>



3. 평가항목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I. 일자리 양	고용증가	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70	가.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과 나. 항목(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
II. 일자리 질	성과공유	가. 미래성과공유 협약 (+15) 나. 성과급 지급 (+15) 다. 임금수준 상승 (+15) 라. 우리사주제도 운영 (+15) 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15) 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5) 사.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15)	3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III. 고용질서 준수	법령준수	가. 고액.상습 임금체불 (-10)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0)	-20	
IV. 가점	근로환경	가. 근로시간 단축 (+10) 나. 정주여건 개선 (+5) 다. 가족친화인증 (+5) 라. 청년친화강소기업 (+5) 마. 노사문화우수기업 (+5) 바. 인재육성형중소기업 (+5) 사.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5) 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5) 자. 현장실습 선도기업 (+5) 차. 중소기업 복지발전 우수활용기업 (+5) 카. 존경받는기업인 대포로 있는 기업 (+5)	10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
합 계			-10~100	가점포함 최대점수 100점

[별표 1]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각 평가항목별 개요 및 문의처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9), https://sanhakin.mss.go.kr
성과급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기업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임금수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자의 해당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우리사주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법안설치 및 기금운영 기업을 성과공유 도입기업으로 지정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청년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하면 적립금+복리이자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근로시간 단축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기부-국토부(LH)가 공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한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044-201-1664)
가족친화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현장실습 선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 중 고졸채용실적, 안전대책 마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 ▪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시·도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 복지 기업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1662)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02-6050-3455)
존경받는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과 "상생"의 기업경영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055-751-9825)